제1016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의 기술적 역량 및 생산능력 구비(신설) ㅇ 무인단말기를 제조하는 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술성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조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 및 생산능력 등을 갖출 것을 규정 ▶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	규제 심사 완료
		2. 무인정보단말기 임대자의 임대의무(신설) ㅇ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임차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술성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도록 의무를 부과 ▶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	규제 심사 완료
		3. 무인정보단말기 제조 · 임대자의 이행사항(신설) ㅇ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·임대하는 자는 기술적·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없는 한 다음 각 호(제품사양서 제공, 기술자료 제공, 기술적 지원)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제조 · 임대자의 이행사항을 규정 ▶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	규제 심사 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 무인정보단말기 제조 · 임대자에 대한 시정명령(강화) ㅇ 키오스크 가격이 고가인 점, 평균 임차 약정기간(3년), 유사 입법례등을 고려하여 설치 · 운영자 또는 제조 · 임대자에 대한 시정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 *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의 키오스크 관련 내용을 해당 내용을 「디지털포용법」으로 가져오며 의무 대상자에 제조 · 임대자까지 포함 → 해당 내용을 반영해 제정안상 시정명령 대상에 제조 · 임대자도 포함 (기존 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은 「디지털포용법」 시행과 동시에 삭제 예정) ▶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	규제 심사 완료
		5. 인증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및 인증기관의 자료보관의무(신설) ㅇ 인증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및 인증기관의 자료보관의무(5년, 전자문서 가능)를 규정 ▶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8조	규제 심사 완료
		6.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지정기준(신설)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험평가기관의 지정 요건(조직·인력)·절차, 유효기간(5년) 등 규정 ▶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6조	규제 심사 완료
		7. 디지털역량센터 지정기준 등(신설) ㅇ 대통령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 운영에 필요한 입지, 규모, 시설 구조 및 설비, 종사자의 수, 운영 등 최소 기준을 규정 ▶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0조, 별표1	규제 심사 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8. 디지털역량지원센터 지정기준 등(신설) ㅇ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문인력·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를 디지털역량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▶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1조	규제심사완료
2	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기준, 보고의무, 시정명령, 업무정지 등(신설) o 지원센터 지정 기준(전담조직·예산·시설 등) 제시 및 지정신청시 제출 항목 규정 o 지원센터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규정 o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업무정지 기준과 지정취소와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▶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	규제심사완료
3	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 보완명령 기간 구체화(신설) o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명하고 이후 기업이 요청할 경우 2개월의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▶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	규제심사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· 평가 기준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 취약점 분석 평가 항목 上(필수항목)(강화) o IT 환경변화에 따른 필수점검 항목의 증가 및 신규 시스템(가상화 장비, 웹서비스) 도입에 따라 주요정보통신시설 취약점 분석·평가 필수항목 추가 및 신설 등 취약점 분석 · 평가 기준 점검항목 개정 ▶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· 평가 기준 전체	규제 심사 완료
5	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 전담기관의 지정 등(신설) o 전담기관의 지정 등 – 농식품이용권 업무 관련 전담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, 전담기관 지정기준, 전담기관의 지정취소·업무정지 기준 등을 규정 ▶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3	규제 심사 완료
6	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할당기준(신설) o 시·도지사가 어획량 배분량 할당시 고려사항으로「어선법」위반 전력 추가 ▶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2조	규제 심사 완료
7	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법무부)	1.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기준 등(신설) o 전문기관 지정 ·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, 법인 또는 단체를 공공기관, 농 · 수협, 비영리 법인 · 단체로 한정 o 전문기관에 업무 범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인력, 시설 등을 보유한 경우,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▶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3	규제 심사 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세부기준(신설) ㅇ 전문기관 지정 신청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즉시 지정취소하고,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차수별로 경고→업무정지 2개월 → 지정취소 조치하며,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경고 → 업무정지 1개월 → 지정취소 조치하도록 행정처분 기준 신설 ▶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4, 별표1의2	규제심사완료
8	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 (기후에너지환경부)	1.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(신설) ㅇ 환경표지 인증대상에 10개 제품군 추가 및 각 제품별 인증기준 신설 ▶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	규제심사완료
9	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 업종별 최대배출기준(강화) ㅇ 발전 · 증기, 폐기물소각, 유기화학, 철강, 비철금속, 석유정제, 무기화학, 비료질소 제조업 내 주요 시설에서 배출되는 일부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을 강화 및 신설 – (신설) 보일러 시설(공통), 포름알데히드(발전 · 소각 업종), 먼지, 황산화물, 암모니아, 불소화합물(비료 제조업) 기준 – (개정) 질소산화물, 먼지, 황산화물, 불소화합물, 납화합물, 크롬화합물, 염화수소, 염화비닐, 스틸렌, 일산화탄소, 탄화수소, 암모니아, 아연화합물, 황화수소, 벤젠, 시안화수소 8개 업종의 17개 물질의 기준 강화 ▶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	규제심사완료